

재정보전금

1 기본 현황

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자치구 재정보전금 교부		
사업비 (당해년도)	1,459,998,000천원	(국비)	(사비)1,459,998,0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재무국	세제과	천명철 2133-3350	류대창 2133-3352	한경숙 2133-3355

*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9예산액 (A)	2020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-) 1,331,648,979	(x-) 1,459,998,000	(x-) 128,349,021	(x-) 9
자치구기타재원조정 정비	(x-) 1,331,648,979	(x-) 1,459,998,000	(x-) 128,349,021	(x-) 9

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0년 예산내역	
자치구기타재원조정 비	○ 공동재산세전출금 1,429,218,000,000원	= 1,429,218,000천 원

과목구분	2020년 예산내역
	○ 면허세 보전금 = 30,780,000천원 200,000,000,000원*15.39%

3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통한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보전금(공동재산세 전출금, 면허세 보전금)을 교부하여 자치구의 세입안정 기여 및 균형발전 지원

□ 사업근거

- 공동재산세 전출금
 - 지방세기본법(제9조~제10조),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(제26조~제27조)
- 면허세 보전금
 - 지방세법 부칙(2000.12.29. 개정)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(2001.12.31.개정) 제6조
 - 시장방침 제1217호(2001.10.27.) 자치구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 계획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0.1 ~ 2020.12
- 지원대상 : 25개 자치구
- 사업수행주체 : 서울특별시 세제과
- 사업의 주요내용
 - 2008년부터 도입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전 자치구에 균등교부(공동재산세 전출금)
 - 2001년 폐지된 자동차분 면허세에 대한 세입감소분 지원(면허세 보전금)

□ 추진경위

- 공동재산세 전출금
 -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: 2007.07.20.
 - 서울특별시세조례 개정 : 2007.11.12.
 -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 : 2008.01.01.
- 면허세 보전금
 -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지방세법 부칙 개정 : 2000.12.29.
 - 면허세 보전금 재정보전계획(시장방침) : 2001.10.27.

2020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1,459,998,000	
재정보전금 교부계획	2020.01~2020.12		교부시 계획 수립
재정보전금 교부	2020.01~2020.12	1,459,998,000	분할 교부

4 사업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17년도	○ 강남, 강북구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6.6배(강남 4,289억, 강북 257억)에서 4.6배(강남 2,577억, 강북 561억)로 완화
2018년도	○ 강남, 강북구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6.7배(강남 4,628억, 강북 277억)에서 4.6배(강남 2,780억, 강북 605억)로 완화
2019년도	○ 강남, 강북구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17.7배(강남 5,263억, 강북 297억)에서 4.7배(강남 3,151억, 강북 669억)로 완화(예산기준)

향후 기대효과

-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 및 재정격차 해소를 통해 균형발전 지원

5 최근 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6	(x-) 1,016,882,930	(x-) 0	(x-) 0	(x-) 1,016,882,930	(x-) 1,016,882,930	(x-) 0	(x-) 0

2017	(x-) 1,110,655,57 5	(x-) 0	(x-) 0	(x-) 1,110,655,57 5	(x-) 1,110,655,57 5	(x-) 0	(x-) 0
2018	(x-) 1,197,593,38 2	(x-) 0	(x-) 0	(x-) 1,197,593,38 2	(x-) 1,197,593,38 2	(x-) 0	(x-) 0